

# 「제9대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

## 안전 부서 검토 결과

□ 안 건 : 아동·청소년의 오후 귀갓길 안전 지킴 강화

【안전총괄과, 아동보육과, 자치행정과】

| 수용 여부  | 의 견  | 비 고          |
|--|--|--------------|
| <p><b>3. 중장기 검토</b><br/>(제안 취지는 공감하나, 일부 현행 서비스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모든 초등학교 대상 보편적 보급은 예산 규모 및 사업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함)</p> | <p>(안전총괄과) 아산시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사고 6대분야 안전 교육(유치원·초등학교 등)과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아동복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 참여형 정기 안전 캠페인을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 확산에 노력하고 있음.</p> <p>또한 초등학교 등하굣길 안전을 주제로 한 안전캠페인 추진 시 형광 안전 키링 등 홍보 물품을 배부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시인성 확보를 도모한 바 있음.</p> <p>한편, 「아산안심홈」(미래도시관리과 운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별도의 장비 없이도 긴급 호출 시 경고음이 발생하고 현재 위치가 관제 센터로 전송되는 안전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아동·청소년의 귀갓길 안전 확보 측면에서 본 제안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음.</p> <p>향후 어린이 안전을 주제로 한 캠페인 추진 시 홍보물품으로 휴대용 안심벨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아산안심홈」 서비스와의 기능 중복 여부, 활용 대상 및 실효성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아동의 귀갓길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의</p> | <p>안전총괄과</p> |

|                                     |  |              |
|-------------------------------------|--|--------------|
| <p>3. 중장기 검토</p>                    | <p>아동·청소년 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음.</p> <p>(아동보육과) 초등안심벨 지급과 관련하여 아동보육과에서는, 그간 아동의 유괴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목적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며 아동 대상 호신·안전 관련 홍보물품을 배부한 바 있어, 본 제안은 기존 캠페인형 아동 안전사업과 취지 및 방식 면에서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p> <p>종합적으로, 본 제안은 아동의 귀갓길 안전 확보라는 정책적 취지에 공감하나, 기존 캠페인형 사업과의 일부 중복, 신청자 기반 지급 방식과 예산 산출 근거의 불명확성 등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추진 시에는 세부 집행 기준과 예산 운용 방안을 명확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p> | <p>아동보육과</p> |
| <p>3. 중장기 검토<br/>(자율방범대 인력부족 등)</p> | <p>(자치행정과) 아산시 자율방범대 18개 지대는 각 관할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주변을 기본 중심으로 하여 야간 우범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순찰코스를 지정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가용 인력과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찰 지정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음.</p>   | <p>자치행정과</p> |

□ 안 건 : 아동·청소년 자전거·전동킥보드 안전 장비 지원사업

【도로관리과】

| 수용 여부   | 의 견   | 비 고 |
|---|---|-----|
| <p>3. 중장기 검토<br/>(교육청·학교 연계 필요, 인센티브 제공 및 등록제 운영을 위한 타 부서 협의와 예산 확보가 요구되어 중장기 검토가 필요)</p> | <p>자전거 뿐만 아니라 킥보드와 같은 PM 교육 추진 및 청소년 대상 자전거 교육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자전거 타기 교육 등)에 따라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추진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p> <p>방치자전거 관련 민원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자전거 등록제 운영을 검토하고 있으며, 예산 확보 및 타기관 벤치마킹 등 아산시에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할 수 있게 노력하겠음.</p> <p>보상형 인센티브 지급 및 할인 쿠폰 제공 등 또한 타 부서와의 협이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향후 관련 부서 및 관계 기관과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p> |     |

□ 안 건 : 시립도서관 어린이·청소년 사서 체험 프로그램 확대

【시립도서관】

| 수용 여부                      | 의 견  | 비 고 |
|----------------------------|--|-----|
| <p>5. 기타(추진불가, 현재운영 중)</p> | <p>어린이·청소년 사서 체험 프로그램은 2025년 신규시책 사업 추진 및 일부 도서관 운영 결과, 강의 및 실습이 담당 사서 1명에 의해 이루어짐에 따라 업무과중이 상당함.</p> <p>또한 모집인원 대비 신청자 수 저조 및 일부 강의 폐강 등 프로그램 확장성 한계로 인해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확대 추진은 불가함.</p> <p>또한 청소년 주체 활동은 배방 월천 도서관의 '티키타카 크루' 로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이며 2026년 성과를 바탕으로 보완·발전할 점을 검토 예정임.</p> <p>도서관 이용 안내 지원(자료실 내 홍보물 부착) 및 전문 사서와의 협업 체계(동계 행정체험프로그램) 또한 현재 운영 중임을 안내드립니다.</p> <p>&lt; 배방월천도서관 '티키타카 크루' 소개 &gt;</p> <p>① 북큐레이션 활동<br/>청소년 관심분야, 사회 이슈 등을 주제로 자료를 직접 모아 전시 및 소개</p> <p>② 프로그램 기획 활동<br/>청소년 진로 직업 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참여</p> <p>③ 홍보 및 운영 활동<br/>티키타카ZONE의 규칙과 운영에 대한 의견 제시, 참여 및 홍보</p> |     |

# 「제9대 아산시 어린이·청소년의회 제2차 본회의」

## 안전 부서 검토 결과

□ 안 건 : 횡단보도(인도) 및 버스정류장 보수 사업

【도로관리과, 대중교통과】

| 수용 여부         | 의 견   | 비 고   |
|---------------|---|-------|
| 5. 기타(사업수행 중) | <p>(도로관리과) 보행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수와 신설을 해야할 사업임. 아산시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보행로는 길이가 긴 만큼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됨.</p> <p>아산시는 보행안전정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개선과 신설에 대해 계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보행로의 길이가 긴 만큼 많은 민원이 있으며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단가계약을 통해 보수를 시행하고 있음.</p> <p>앞으로도 많은 민원에 대해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음.</p> | 도로관리과 |
| 1. 즉시(연내)수용   | <p>(대중교통과) 생활주변의 안전 위험요인,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등을 발견하면 언제 어디서나 위험사항을 홈페이지 또는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의 정부 공식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아산시는 카카오톡 채널인 '아산시생활민원'을 통해서 생활민원 창구로 도로 파손이나 가로등 고장, 불법 폐기물 투기 등 생활 현장</p>   | 대중교통과 |

|  |   |  |
|--|---|--|
|  | <p>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원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음.</p> <p>아산시는 노후되거나 안전에 취약한 버스정류장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을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사항을 처리하고 있음.</p> <p>아울러 제안하신 바와 같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위험 요소를 신속히 파악하여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음.</p> <p>앞으로도 아동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음.</p> |  |
|--|---|--|

□ 안 건 : 아동·청소년 관계 형성 프로그램 확대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수용 여부               | 의 견   | 비 고 |
|---------------------|---|-----|
| <p>1. 즉시(연내) 수용</p> | <p>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현재 운영 중인 관계형성 프로그램 「별빛마중」을 중심으로 관계 형성 지원을 지속 추진할 예정임</p> <p>본 제안에 따라 기존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강화하고, 관계 취약 아동·청소년의 발굴 및 참여 확대를 도모하겠음.</p> <p>아울러 학교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관계 증진을 위한 또래상담 지도자(교사) 협의회를 운영하여 아동·청소년의 또래 관계 형성을 지원하는 지역 기반을 확대해 나갈 예정임.</p> |     |

□ 안 건 : 청소년 진로 축제 확대

【아산시청소년재단】

| 수용 여부                  | 의 견  | 비 고 |
|------------------------|--|-----|
| <p>1. 즉시(연내) 일부 수용</p> | <p>본 안건은 청소년 진로 축제의 인지도 부족과 참여 기회 제한에 대한 문제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제기한 것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 기회 확대 및 주체적인 진로 설계 지원이라는 제안 취지에 공감함.</p> <p>현재 아산시에서는 청소년의 적성과 흥미 탐색, 진로 인식 확대를 위한 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진로 축제가 특정 시기에 집중운영됨에 따라 일부 청소년에게는 정보 접근 및 참여 기회가 제한되는 한계가 있음.</p> <p>이에 따라 학교 연계 홍보 강화와 가정통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확대는 즉시 반영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2026년도 진로 축제 추진 시 적극 반영하고자 함.</p> <p>아울러 선호 직업군 중심의 체험형 진로 부스 운영과 대학·기관·전문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 운영의 내실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임.</p> <p>다만, 진로 축제 운영 횟수 확대는 예산 및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2026년도 운영 결과 및 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으로 단계적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함.</p> |     |

□ 안 건 : 안전한 놀이문화를 위한 자전거 공원 조성

【도로관리과, 공원관리과】

| 수용 여부   | 의 견   | 비 고          |
|---|---|--------------|
| <p>3. 중장기 검토<br/>(자전거 공원 조성을 위해 부지·조성·유지 관리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자전거 교육장은 통합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재구성해 연령별 안전 교육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익스트림 자전거 대회 개최를 위해 장소·예산 확보 및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요구됨)</p> | <p>(도로관리과) 자전거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와 조성 예산이 필요하며, 조성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함.</p> <p>자전거 안전교육 강사 배치를 위해서는 인건비 등 관련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현재 이용률 저조 및 시설 노후화로 폐쇄된 자전거 안전교육장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운영 및 활용 방안을 검토중임. 향후 자전거 교육장을 통합 안전체험교육장으로 조성하여 연령별 안전교육을 추진하고자 함.</p> <p>익스트림 자전거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개최 장소 및 예산 확보가 필요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타 부서와의 사전 협의가 요구됨.</p> <p>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 여건과 추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p> | <p>도로관리과</p> |

### 3. 중장기검토

공원관리과

(공원관리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원의 종류는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체육공원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자전거공원’이라는 명칭의 공원 유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같은 법 제49조에 의거 다른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우리 시 공원 내에서는 자전거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다만, 자전거 트랙과 같이 신체 활동 및 레저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공원의 범주에 포함되어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8호에 따라 일반경기용으로 전용되는 운동시설은 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체육공원에 설치가 가능함. 해당 운동시설 설치를 위한 체육 공원 조성은 담당 부서 및 관계 부서와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 드립니다.